

의안번호	2200646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4. 7. 2.
추 계 번호	24C1053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억 1,200만원, 2029년 6억 6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1억 9,600만원(연평균 6억 3,900만원)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산후조리원 평가 (안 제15조의20)	612	626	639	652	666	3,196	639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 17(지방자치 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)	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5조의 20(산후조리 원 평가)	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·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야 함 - “평가할 수 있다”를 “평가하여야 함”으로 개정	의무규정
3	안 제23조의 2(임신·출산· 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)	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2	안 제15조의20(산후조리원 평가)	○	
3	안 제23조의2(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신규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수, 설치 규모 및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개소이고,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가 마련되고, 현재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시스템 연계 방법 및 확대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임신·출산·육아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“아이사랑”을 운영 중인데, 시스템 연계 방법 및 통합 규모 등에 따라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산후조리원 평가(안 제15조의20)

- 평가 대상 산후조리원 수는 480개소로 추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-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산후조리원 수는 2022년 486개소, 2023년 상반기 기준 476개소임
 - 산후조리원 평가는 매년 일정 수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산후조리원 수는 추계기간 동안 480개소로 추정함
- 매년 전체 산후조리원의 3분의 1을 평가하여 3년마다 평가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
 - 현행법 시행규칙²⁾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계획³⁾을 참고하여 매년 전체 산후조리원(480개소)의 3분의 1인 160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3. 11.)

(단위: %)						
연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	2.4	2.2	2.2	2.1	2.1	2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(산후조리원의 평가)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.

3)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5년부터 매년 160개소의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

- 산후조리원 평가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“산후조리 시범평가 연구용역”의 산후조리원 평가비용을 준용하되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- 보건복지부가 2017년 수행한 “산후조리 시범평가 연구용역”에서는 개소당 산후조리원 평가비용을 320만원으로 추정하였음

[표 2] 개소당 산후조리원 평가비용 산출내역

(단위: 만원)

수행기관	지원액	사업내용
직접비(A)	192	·평가관련 직접비용
－ 조사위원 수당	90	·30만원×3명
－ 조사위원 숙박비	36	·12만원×3명
－ 조사위원 일비	12	·2만원×3명×2일
－ 조사위원 식비	9	·3만원×3명
－ 시외 교통비	24	·8만원×3명
－ 조사위원 교육비	9	·3만원×3명
－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비	12	·3만원×2명×2회
간접비(B)	128	·위탁기관 관리운영비(인건비, 임대료, 경비 등) ·직접비의 약 67% 수준
총계(A+B)	320	·직접비+간접비

자료: 보건복지부 「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용역」(2017년)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160개소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향후 5년간 31억 9,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- 산후조리원 평가비용은 연간 평가 대상 산후조리원 수에 평가비용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
 - － 평가비용 단가는 2023년 기준 366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
[표 3] 산후조리원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평가 대상 산후조리원 수(A)	160	160	160	160	160	
평가비용 단가(B)	3.83	3.91	3.99	4.08	4.16	
추가재정소요 (A×B)	612	626	639	652	666	3,196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산후조리원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“산후조리 시범평가 연구용역”의 산후조리원 평가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산후조리원 평가 주기 및 평가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